

현대 도서관직 중립성에 나타난 인권사상의 분석적 고찰

목 차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제한점
2. 중립성의 정의
 - 1) 사전적 정의
 - 2) 국제적십자의 정의
 - 3) 언론의 정의
 - 4) 네트워크상의 정의
3. 도서관직의 중립성과 인권 사상
 - 1) 도서관직의 정의
 - 2) 추론적 분석 및 결과
4. 결론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주장과 견해를 세계인권선언서)의 인권사상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추론적 내용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 자유와 관련해서, 도서관인들은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를 옹호하는 집단과 사회안전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지적자유를 옹호하는 집단은 고객에 대한 UDHR 18조와 19조의 권리가 도서관인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 사회적 안정을 강조하는 집단들은 고객의 이러한 권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UDHR 3조의 권리 즉,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덕과 윤리에 따라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도서관인의 UDHR 18조와 19조의 권리 역시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수적 도서관인 보다는 진보적 도서관인을 중심으로 사회약자가 UDHR의 1조와 2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인간적 존엄과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의 권리를 누구나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배 세력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도서관, 중립성, 인권, 도서관 철학

1. 서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계몽운동으로 출발하여 민주사회

를 위한 교육 및 학습의 플랫폼을 거쳐, 최근에는 인권 지향적인 정치적 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정의의 산실로 그 역할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 같은 진화의 주요한 동력 중의 하나는 도서관직(librarianship) 중립성이며, 이 주제의 철학적 또는 정치적 사상에 대하여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지역 도서관인들 간의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이들 지역 도서관계에서 유난히 이 주제가 논쟁의 중심이 된 중요한 요인들은 아마도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로스와 게이디(Ross & Caidi, 2005, pp. 97-99)가 지적한대로 9.11과 같은 테러로 인하여 점증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적 안전에 대한 주민의 염려이고, 또 하나는 브래넘(Branum, 2014)이 주장으로 지역사회에서 사회약자 - 유색인, 빈자, 노숙자, 동성애자 등 -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규모의 축소에 대한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주류 주민의 불만이다.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염려와 불만의 내면적 본질은 바로 도서관의 고객에 대한 정보접근의 자유, 차별금지, 그리고 정보봉사의 평등에 관한 차별이다.

실제로 이들 지역 공공도서관 중에서는 중립성의 철학을 근거로 차별 없고 자유로운 정보 접근의 권리를 근거로, 누구에게나 도서관 정보의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도서관 고객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도서관 고객의 일부가 공공의 재화인 도서관 정보를 사적으로나 분파적으로 악용하여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안전 및 보호와 사회적 불안의 해소란 명목으로 도서관 고객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사생활보호 권리를 정치적 또는 제도적으로 검열하거나 차단시키려는 입법 - 예를 들어, 미국의 PATRIOT 법 - 뿐만 아니라 도서관인의 자의적 검열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지역 주민의 세금이 그것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주요 납세자인 주류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사회약자와 자신들이 도서관 재정의 기여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평등한 도서관 봉사를 받는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류 주민의 이러한 불만은 도서관 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의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 및 인터넷 제공과 같은 도서관의 행정 및 기술 업무에서부터 도서관의 정책으로까지 점점 더 확대됨으로써 사회약자의 차별적 봉사를 정당화하여 이들의 평등권을 점점 침해하고 있다.

현대 도서관 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단지 북미지역 도서관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 여러 곳의 도서관인 역시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통적인 도서관직 중립성을 철학적 또는 정치적 사상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의 뿌리는 바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인권이다.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문직이란 철학적 토대가 공고하지 않으면, 전문직이라 말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철학적 토대가 빈약한 전문직은 그저 평범한 일반직에 불과하며, 이러한 직업은 그것의 업무 처리와 관련된 통상적인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일상의 일을 하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서관직은 전문직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젠도네이드(Zandonade, 2004, pp. 815-820)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도서관직의 기본적 철학 및 이론과 “Dead German¹⁾”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도서관직의 전문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직

1) 학문의 지적 근거를 제공한 중요한 이론가 집단. <web.utk.edu/~gwhitney/german.htm>

의 철학과 그것의 이론적 가치가 공고해지도록, 연구자들 간에 더 많은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도서관직의 철학적 논쟁의 중심에 도서관직 중립성이 있다. 따라서 전문직으로서 도서관직의 철학적 또는 이론적 기초를 공고히 하고 도서관직의 사회적 책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을 인권 사상을 근거로 분석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도서관 환경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테러와 다민족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미지역 도서관 환경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닮아가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 도서관인이 밝힌 도서관직 중립성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세계인권선언서(이하 UDHR이라 함)에서 선언한 인권사상을 근거로 그 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도서관의 정책 수립, 도서관 교육의 방향, 그리고 도서관인의 업무규정 마련에 필요한 철학적 그리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제한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한 국제도서관연맹(이하 IFLA라 함), 미국도서관협회(이하 ALA라 함),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이하 KLA라 함)의 정의와 주로 북미지역의 도서관인의 학술기사의 내용을 코더인 국제정치전공 교수 1인과 함께 질적 분석방법인 추론적 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북미지역 도서관인의 견해와 주장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가 보편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며, 또한 추론적 데이터 분석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술기사의 내용분석에 코더의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2. 중립성의 정의

일반적으로 중립성의 보편적 의미에 대하여 도서관직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학문 및 실무 분야에서 맞춤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이것의 정의와 의미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사전적 정의와 기타 이 용어를 사용하는 몇몇 관련분야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1) 사전적 정의

본 연구의 중요한 논제인 중립성에 대한 정의를 일반사전이나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첫째 중립성이란 “논쟁, 싸움, 전쟁 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 성질이나 상태 또는 한 쪽 편이나 다른 쪽 편에 대한 편애의 결핍²⁾”을 의미하며, 둘째 이것의 철학적 관점에서, 중립적이란 단어는 “일상 회화에서 무편향이란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중립성이란 물리적 또는 사상적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 성향, 즉 편견 없음을 의미하며, 종종 제3자(neutral parties)라는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그렇지만 제3자란 간혹 어느 한쪽에 관여하거나 스스로 어느 한쪽의 당사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³⁾”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가 있으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추가로 살펴보면, 중립

2) Merriam-Webster의 정의. <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neutrality>

3) Neutrality. <[en.wikipedia.org/wiki/Neutrality_\(philosophy\)](http://en.wikipedia.org/wiki/Neutrality_(philosophy))>

적이란 “다자간의 논쟁이나 전쟁에 도움을 주지도 참여하지도 않는 것이며, 논쟁에 있는 어느 편이나 입장을 지지하거나 편들지 않는 것⁴⁾” 이고, “어떤 논쟁에 대하여 어느 편을 기피하거나 좋아하거나, 또는 나빠하거나 나빠하지 않는다면, 중립적이라는 것⁵⁾”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중립성이란 “(1) 특히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중립적 상태나 정책 또는 논쟁, (2) 경쟁 등에 있어서 중립적인 상태나 성격, (3) 특히 전쟁이나 무장투쟁과 같은 투쟁에서 어느 파티나 견해에 동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거나 편파적이지 않는 상태나 지위나 입장” 이라면서, 이것의 동의어⁶⁾, 관련어⁷⁾, 관련반의어⁸⁾, 반의어⁹⁾를 제시¹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맥락으로 살펴본 중립성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간략하게 종합해 보면, 중립성이란 논쟁이나 다툼의 당사자에 대하여 어느 한쪽도 편들거나 지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상태 또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국제적십자사의 정의

골(Gaul, 2013, pp.55-65)은 중립성 원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인 헤이그 조약(the Hague Conventions)은 국제적 분쟁과 관련해서 중립국가의 의무와 책임 면제를 성문화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중립성은 박애주의자의 행동 원칙으로 종종 인용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맥킨토시(Mackintosh, 2000)는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비평 등에서 표현되는 것과 같은 사상적 중립성이고, 또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교전에 참가하지 않는 불개입적 중립성이지만, 특히, 후자가 박애주의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근거라 하였다.

이러한 박애주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제기구인 국제적십자사(IFR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이며, 이것의 운영철학에 명시된 7가지 기본원칙¹¹⁾ 중에 중립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십자사의 중립성이란 ‘모두의 신뢰를 계속해서 얻기 위해, 우리 활동은 어느 편에 대해서도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본질에 대한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¹²⁾’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 Neutrality. <dictionary.reference.com/browse/neutral>

5) Neutrality. <wiki.answers.com/Q/What__is__Nuetrality?#slide=2>

6) non-engagement(비참여), non-involvement(비참여), nonparticipation(비참가), withdrawing from the activities of a group(집단행동의 회피), disinterest(무흥미), disinterestedness(무관심), equity(공평), evenhandedness(공정), fair-mindedness(정당), fairness(공평), impartiality(무편견), justice(정의), neutralism(중립주의), neutrality(중립), nonpartisanship(무파벌), objectiveness(객관), objectivity(객관성)

7) apathy(무감정), indifference(냉담), unconcern(무관심), broad-mindedness(관대), open-mindedness(관용), tolerance(인내), fence-sitting(기회주의), straddling(거취불명).

8) chauvinism(극단적 애국주의), nepotism(친척중용), subjectiveness(주관), subjectivity(주관성), bent(호감), inclination(편중), leaning(기움), penchant(기호), predilection(편애), predisposition(기질), proclivity(성벽), propensity(나쁜 성향), tendency(경향), preconception(선입견), prejudgment(편견).

9) bias(편견), favor(호감), favoritism(편애), nonobjectivity(비객관성), one-sidedness(일방성), partiality(편파성), partisanship(당파성), prejudice(편견)

10) Farlex의 정의. <www.thefreedictionary.com/neutrality>

11) Humanity, Impartiality, Neutrality, Independence, Voluntary service, Unity, Universality

12) Neutrality. <http://www.ifrc.org/en/who-we-are/vision-and-mission/the-seven-fundamental-principles/neutrality/>

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제적십자의 중립성이란 특히, 전쟁이나 싸움 중에 있는 관련 당사자들의 어느 한쪽에게 적대적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행동 철학이라 말할 수 있다.

3) 언론의 정의

중립성의 또 다른 표현 중의 하나인 객관성은 신문방송과 같은 언론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 객관성이란 중립성과 동의어로 해석되기도 한다. 언론의 객관성은 언론의 전문성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이며, 공정성, 불개입성, 사실성, 무편파성을 의미하며, 또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미로도 해석되기도 한다. 하나는 탈개인화(depersionalisation)인데, 이것의 의미는 언론인은 자기 자신의 견해, 평가 또는 믿음을 공공연하게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균형인데 이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고 논쟁의 양쪽 모두의 견해를 똑같이 보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¹³. 그리고 외부의 영향 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언론인의 능력도 때때로 중립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⁴.

이처럼 언론의 객관성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어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은 진실을 찾는 데 경험적 증거로 검증해야 한다는 과학적 객관성과는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느낌, 믿음, 판단과 같은 마음의 내면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실을 표현하는 철학적 객관성과도 구별¹⁵되고 있다. 또한 코스티간(Costigan, 2010, p.6)은 언론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중립성이란 공공연한 편견의 부재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에 대하여 중립적인 언론인은 어느 한 편을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객관적 언론인은 논쟁거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인 상태에 머물지 않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판단되는 쪽의 주장을 선택하여 지지할 것이므로, 언론의 객관성이란 언론인의 객관적 판단에 의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립성이란 어느 한쪽도 결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언론의 객관성이란 언론인이 여러 정보원으로부터 다양하게 수집된 사실의 보도 및 진실의 추구하고 관련된 중요한 사상적 철학이지만, 언론인 자신의 개별적 편견, 해석, 느낌, 그리고 상상에 따라 객관화될 수 있는 상태나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네트워크상의 정의

넷 중립성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가 인터넷의 사용자, 콘텐츠, 사이트,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첨가 기기의 유형, 그리고 통신 방식에 따라 서로 간에 차등적 요금을 책정하거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미디어 법 전공자인 우(Tim Wu)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¹⁶.

특히, 도서관과 관련해서 넷 중립성이란 “온라인의 비차별 개념이며, 도서관 고객은 그들이 원하는 인터넷 콘텐츠와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제공받는데 무료이어야 하며, 그들의 접

13) media objectivity. <www.uow.edu.au/~sharonb/STS218/media/objectivity.html>

14) objectivity philosophy. <[en.wikipedia.org/wiki/Objectivity_\(philosophy\)](http://en.wikipedia.org/wiki/Objectivity_(philosophy))>

15) journalistic objectivity. <en.wikipedia.org/wiki/Journalistic_objectivity>

16) Net neutrality. <en.wikipedia.org/wiki/net_neutrality>

근이 인터넷의 콘텐츠나 서비스의 내용이냐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¹⁷⁾’ 이므로, 온라인 서비스 업체와 같은 정보 제공자가 도서관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동일한 품질로의 정보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넷 소유자 역시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초기부터 넷(net) 중립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거대한 상업적 세력들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콘텐츠의 넷 보급을 차단하고 심지어 이 경쟁자들을 업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라스트 마일 기술(last mile infrastructure)¹⁸⁾을 사용하는 광대역 통신 제공자의 역할을 통제하려 함으로써, 넷 중립성의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종합해 보면, 일변적인 넷 중립성의 정의나 도서관직의 넷 중립성의 정의 둘 다 넷 고객은 누구나 스스로 필요한 웹 콘텐츠와 서비스의 성질 및 종류와 상관 없이 특히 고속의 통신망을 무료로 그리고 제한없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법률적 논쟁거리란 것을 알 수 있다.

3. 도서관직의 중립성과 인권사상

1) 도서관직의 정의

위에서 살펴봤듯이, 중립성이란 평등이란 수사를 사용하여 당사자 간의 싸움에 편들지도 간섭하지도 않는 무위적 상태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도서관직 중립성의 정의는 전공용어사전이나 학술기사에서 너무나 많이 그리고 철학적 또는 경험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철학적 정의나 개념을 알아보고자, IFLA와 KLA의 「도서관인 윤리강령」과 ALA의 「도서관 권리 선언」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표현된 중립성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해 본다.

먼저 IFLA에서 선언하길, “도서관인은 장서, 접근,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립적이고 편파적인 않은 입장을 엄격하게 취하여야 하고, 고객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하여 최상의 균형 잡힌 장서와 최상의 균형 잡힌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개인적 신념과 직업적 의무를 구분하여 자신들의 중립성을 대가로 사적 이익이나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고객과 관련된 중립성의 원칙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근무지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면서, 또한 IFLA(2014)는 “도서관인은 부패행위의 반대 그리고 직업의 긍정적 명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도서관의 중립성에 해당한다”고 밝힘으로써,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직업적 의무로 장서개발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수사적으로 분명하게 촉구하고 있다.

IFLA에서 도서관직의 중립성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FLA와 달리, ALA(1996)에서는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중립성의 철학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살펴보면, “도서관 자료는 저작자의 출신, 배경,

17) ALA net neutrality. <www.ala.org/advocacy/telecom/netneutrality>

18) 광대역 전송신호를 가정이나 회사로 통하는 마지막 1 마일내외의 상대적으로 짧은 구간에 적용되는 통신기술. <searchnetworking.techtarget.com/definition/last-mile-technology>

또는 견해 때문에 도서관 장서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하고, 현대사뿐만 아니라 과거사에 관한 모든 사고나 견해를 나타내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것이 당파 또는 교리상의 이단이란 이유로 배척되거나 제거되지 않아야 하며, 도서관 고객의 권리가 출생지, 나이, 배경, 또는 견해 때문에 거부되거나 축소되지 않아야 하고, 도서관은 도서관 고객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에 개인이나 집단의 믿음이나 소속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ALA가 중립성의 정의에 대하여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비벤-타툼(Bivens-Tatum, 2006, p. 25)은 ALA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중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청사진도 없고, 또한 회원 도서관 간에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견해가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치된 내용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ALA가 도서관직과 관련해서,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종교적 및 인종적 편견을 근거로 저작자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IFLA의 중립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KLA(1997) 역시 ALA처럼 중립성에 대한 뚜렷한 수사적 표현없이 “도서관인의 책임은 비판적 자기성찰과 윤리적 각성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7가지의 주제¹⁹⁾에 대한 윤리적 지표를 천명하였다. 그 중에서, 도서관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이 책무, 봉사, 자료 항목에 나타나있다. 그 내용을 발췌해 보면,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키고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하며, 이용자의 이념,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거부하며,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KLA는 IFLA와 달리 ALA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도서관직의 중립성에 대하여 수사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않고 있으며, 그 내용도 ALA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들 기관 모두 구체적으로 도서관직 중립성의 본질을 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직 중립성의 핵심은 고객에게 최상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든지 저자 및 자료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그 책임이 도서관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2) 추론적 분석 및 결과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한 학술기사 속에는 학자 자신의 철학적 또는 정치적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이러한 학술기사만을 선별하여 그것들의 내용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사상을 도서관직의 중요한 인권사상으로 이미 기존의 연구(김선호, 2013, 26-27쪽)에서 밝혀진 UDHR의 9개 권리²⁰⁾를 기준으로, 이들 조항 중에서 어떠한 조항이 도서관직 중립성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추론적으로 분석하여 고찰한다.

19) 사회적 책무, 자아성장, 전문성, 협력, 봉사, 자료, 품위

20) UDHR의 1조(존엄/평등), 2조(차별금지), 3조(생명/자유/안전), 8조(구제), 12조(사생활보호), 18조(사상/양심/종교),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 25조(건강/복지/환경), 그리고 26조(교육).

(1) 추론적 분석

일찍부터 도서관직 중립성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기사에서 Foskett(1972)은 도서관직의 철학적 토대를 근거로 도서관이란 사회조직의 한 부분이며 도서관직은 지역의 삶과 밀접하게 꼬여있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서관인은 자신의 개성이 도서관 업무를 발전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자신을 들어내지 않아야 하며, 특히 자신의 정치, 종교, 도덕을 주장하지 말고 독자의 분신이 되어야 하므로, 독자가 요구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를 전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독자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한 명의 요구자 다음에는 또 다른 요구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신속하고도 카멜레온 같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도서관인이 스스로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모든 정치, 종교, 도덕을 수용하게 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Fokett, 1962, p. 10).

이와 같은 Foskett의 견해를 인권사상과 연결해 보면, 그는 도서관인은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 자유를 보장하여 이들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것은 도서관 고객을 위한 UDHR 2조(차별금지),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추론된다.

Foskett의 이러한 주장을 비판한 논쟁적 논문이 Berninghausen(1972)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는 이 글을 통해, ALA와 그것의 회원도서관들이 주류 세력의 보수적 성향을 강조한 나머지 엄격한 중립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지적자유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술하면서, 지적 자유란 보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이 서로 어우러져 완성되는 것이므로, 도서관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적자유 원칙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만일 도서관 고객이 사실, 정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에 필요한 다양한 견해에 접근할 수 없다면, 그들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이성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책임과 지적 자유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지적 자유의 완수에 대한 책임이 도서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중립적 지위는 도서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자료의 축출이나 배제를 유발하게 될 것” 이라고 말하였다(Berninghausen, 1972, pp.79-80).

이러한 Berninghausen의 중립성에 대한 견해를 인권사상에 비추어 보면, 그는 지적 자유의 완성을 위해 UDHR의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에서 선언한 모든 권리가 도서관 고객에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Foskett과 달리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도서관인은 고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나 소신을 UDHR의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에 따라 떳떳하게 밝혀야 하고, 특히 UDHR의 2조(차별금지)에서 표현한 데로 특정 자료라도 고객이 그것을 원하면 이용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Hauptman(1976)은 도서관인이 비록 사회적 윤리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그들은 도덕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의사결정을 포기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도서관직 중립성을 윤리성과 결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는 도서관직 중립성에서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윤리가 결코 검열이 아니며 단지 우리의 직업적 책임” 이라면서 도서관인의 직업윤리를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다(Hauptman, 1976, p. 292). 그리고 그는 이러한 도서관인의 직업적 윤리성 조사를 위해, 13개의 도서관(6개 공공도서관과 7개의 학술도서관)을 대상으로 폭발물 제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어느 도서관도 그리고 어떠한 도서관인도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에 해로울 수 있는 폭발물에 관한 정보의 제

공을 거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연구 질문이 본질적으로 도서관인이 고객을 차별대우하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도서관인은 어떤 형태로든지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대하지만, 검열과 윤리적 책임의 혼돈하여 도서관인이 어떤 쪽을 편들어 자신의 윤리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검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교육을 세뇌와 혼돈하는 것이 모순이듯이, 매우 고상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반사회적 행동을 지원하고 부추기는 행동과 혼돈하지 말아야 하고, 끝으로 누구나 정보로의 자유롭고 보편적인 접근이 민주사회의 중요신조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Hauptman의 생각을 인권사상으로 분석해 보면, 그는 도서관 고객의 UDHR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인은 고객의 이러한 권리에 맞서서 UDHR 3조(생명/자유/안전),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근거로 검열보다는 사회적 도덕과 윤리로 고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lanke(1989)는 일반적으로 중립성이란 주류 세력의 편을 드는데 필수적인 편파심을 말하므로, 결국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세력들의 명령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사고라고 비판하였다. 그는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하여 도서관인의 사회적 윤리성을 강조하면서, 비정치적 도서관인이라는 신비성이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만, 정치적 말해서 기존의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이익 집단에 맞서서 자신들의 가치를 지키려는 도서관인의 의지가 없다면, 정보로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의 보장과 같은 기본적 도서관 이상(ideal)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정보란 더 이상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상업적 가치를 갖춘 생필품이 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도서관 봉사의 평등성이 균형을 잃고 있으며, 더욱 불행한 것은 사회약자의 정보요구에 대한 관심이 경제적 이유로 제단 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Blanke, 1989, p.40). 끝으로 그는 도서관직이 등대 불빛과 같은 명확하고도 철학적인 정치적인 이상이 없다면, 이것의 중립성은 소멸될 것이며, 권력과 특권의 흐름에 따라 덧없이 떠돌게 될 것이며, 만약 도서관직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 사회의 지배층인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권력에 대하여 무비판적인 성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도서관인의 정치적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통해, Blanke는 기존의 주류 세력의 명령과 간섭에 대하여 도서관인은 UDHR의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로 맞서야 하며, 도서관 고객인 사회약자도 인간으로서의 대접과 평등하고 차별없는 봉사를 받을 권리 즉, UDHR의 1조(존엄/평등)와 2조(차별금지)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Dowd(1989)는 도서관의 참고업무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조사하였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하우프만의 유명한 폭탄질문조사에서 나타난 도서관인의 반응이 윤리적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는 참고 도서관인을 상대로 코카인을 정제하려는 고객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그가 기대했던 데로, 어느 도서관인도 자신을 돕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서관인은 고객의 정보요청에 대하여 그것의 사용 용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폭발물이든 코카인이든 해당 자료를 읽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결과도 하우프만의 결과와 역시 비슷했다고 결론 내렸다.

Dowd의 이 같은 주장은 Hauptman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인은 고객의 정보접근과

관련해서 자신의 직업윤리와 상관없이 이들의 UDHR의 2조(차별금지),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Stoffle과 Tarin(1994)은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해 말하면서, 다문화주의란 스스로 독립된 힘을 유지하고 있는 소수세력을 끝없이 커가는 다수세력에서 탐내는 공물이 아니라, 양 쪽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경제적 생존과 모두의 평등을 약속하는 필연적 사고이므로, 도서관은 다문화인 고객이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지식의 중요한 보고인 도서관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분명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임무를 성공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사회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생존은 위협에 빠질 것이고도 주장하였다.

위의 내용을 통해 이들은 도서관직의 중립성을 통해 도서관 고객인 인종적 소수자들에 대한 UDHR의 1조(존엄/평등), 2조(차별금지), 그리고 3조(생명/자유/안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도서관인 스스로도 다문화문제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말고,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에 보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erson(1998)은 우리 사회가 점점 정보를 생필품으로 여기게 되면서, 힘의 쏠림이 정보접근이 가능한 사람 쪽으로 기울고 있어서, 정보접근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약자로 남게 되지만, 도서관인은 거의가 이들을 위한 자신들의 정치적 역할을 거부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직업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의 원칙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인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자료를 지원하는데 있어 전문가로서 그것이 선한 것인지 또는 악한 것인지를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때에 자신의 견해 또한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도서관인이 자료를 선택할 때, 그것의 객관성 또는 공평성을 “metanarrative²¹⁾”를 통해 지적 자유의 완수와 결부시킨다면, 도서관인은 사회약자의 정보접근 및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호자가 될 것이며, 검열을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견해는 도서관 고객 특히 사회약자의 정보접근과 관련해서 이들의 UDHR 2조(차별금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은 지적 자유의 완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Joyce(2000)는 도서관직 중립성의 철학에 사회정신(ethos)을 도입하여 도서관인이 차별과 편견으로 숨어 지내는 사회약자를 배제시키려는 이성애자 그리고 가부장적 현상의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 증거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LGB(Lesbian, Gay, Bisexualist)자료가 실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Library and Information Abstracts(LISA), Information Science Abstracts(ISA), Library Literature,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RIC)에 색인되어 있는 동성애자 관련 자료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부족을 지적하였다(Joyce, 2000, pp. 275-277). 또한 그는 공공도서관에서 이처럼 LGB 자료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인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민감한 논쟁적 이슈에 대하여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1) 다른 이야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dictionary.reference.com/browse/metanarrative>

이러한 Joyce의 주장은 도서관인이 사회약자인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에 대한 UDHR 1조(존엄/평등)과 2조(차별금지)의 권리를 사회적 도덕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Samek(2004), pp.13-16)은 자신의 글에서 진보적 도서관직의 중립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포스켓의 말대로 “도서관이란 사회적 조직이고 도서관직은 사회적 행동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사상적 투쟁의 주체이면서 객체라면서, 도서관직 중립성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봉사의 포괄성과 정보 접근의 평등성이 경제적 빈자, 사회약자, 그리고 차별받는 사람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Samek, 2004, pp.15-16), 기존의 도서관직 중립성의 객관성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통하여 Samek의 진보적 도서관직의 중립성에는 도서관 고객 특히 사회약자에 대한 UDHR의 1조(존엄/평등)와 2조(차별금지)의 권리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od(2007)는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장소는 도덕적 위기시기에 자신들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는 단테(Dante)의 신곡 내용을 예로 들면서(Good, 2007, p. 25), 중립성이란 견실하고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자신들의 기준을 정의하는 윤리적 세력이 자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꾸민 겉치레의 결과물이라 비난하였다. 그는 또한 중립성이란 도덕적 상대성에 대한 논리적 결과이며, 이것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아우슈비치 수용소에 잠깐 머문 다음에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면서 포스켓처럼 보편적으로 확고한 객관성을 옹호하는 보수적 중립성에 대한 주장들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Good은 보수적 중립성 또는 객관성을 비난하면서, 오늘날 도서관인은 UDHR의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에 따라 자신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도덕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anum(2008)은 중립성이란 도서관인이 자신의 전문직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추상적 개념이며, 다른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인은 모든 대중에게 그들의 도덕적 가치와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봉사해야 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식에 고객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중계자의 역할이 도서관인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첫 번째 수정헌법을 예로, 국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으므로, 도서관 역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는 서구의 공공 도서관들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백인이 지배하는 남성 사회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성이나 사회약자의 견해는 종종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약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는 노력마저도 도서관직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기존 주류 세력에 동화 또는 순응시키려는 시도를 들면서, 도서관직이 만약에 사회약자를 배제시키는 이와 같은 중립성을 고집한다면, 궁극적으로 도서관직 중립성은 허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세력의 패러다임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Branum의 주장은 여성과 사회약자와 같은 도서관 고객에 대한 UDHR 2조(차별금지),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위하여 기존 지배세력에 대항하는 도서관인의 UDHR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Jackson(2010)은 도서관인은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

아야 하지만, 고객이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떠한 유형의 고객인지에 대하여 미리 예단할 수 없으므로 도서관인은 제한도 없고 검열도 없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참고봉사 시에 고객과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분명하게 고객의 범죄적 의도를 인지할 수 없다면 보수적 도서관직의 중립성에 따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쟁점의 주장은 포스켓의 주장처럼 도서관인은 범죄 자료 제공이라는 윤리적 책임보다는 도서관 고객의 UDHR 2조(차별금지),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학술기사 속에 표현되어 있는 도서관직 중립성의 견해를 각각 추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직의 중립성은 도서관 고객에 대한 도서관인의 봉사 또는 직무 철학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철학은 도서관 고객의 자유로운 정보접근과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로 나눌 수 있다.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자유와 관련해서는 지적 자유의 완수를 위해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견해와 사회안전을 위해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로 다시 나뉘고 있다. 먼저 도서관 고객의 조건 없는 정보접근자유와 도서관인의 개입금지를 옹호하고 있는 학술 집단은 Foskett, Blanke, Iverson, Branum, Jackson 이며, 이들 중에서 특히, Foskett, Iverson, 그리고 Branum은 무제한의 정보접근자유가 곧 지적 자유의 완수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며, 또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인권 사상으로 이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도서관인은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자유를 위하여 그들의 UDHR의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집단의 견해에 대하여, Berninghausen, Hauptman, Dowd, 그리고 Good은 도서관 고객의 무조건적인 정보접근자유를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도서관 고객의 이러한 자유는 사회안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봉사를 담당하는 도서관인은 사회안전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도서관인의 개입을 통한 도서관 고객의 제한적 정보접근자유를 옹호하고 있으며, 이것의 기준으로 도서관 교육이나 직업적 경험으로 형성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견해를 인권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자유는 사회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도서관인도 주민의 UDHR 3조를 위하여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갖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고객의 무리한 정보접근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자유에 대한 논쟁 속에서 Berninghausen, Blanke, Stoffle & Tarin, Joyce, Samek, 그리고 Branum은 장서개발과 자료선택 시에 사회약자에 대한 평등 보장과 차별금지가 정보접근자유에 못지않은 도서관직 중립성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도서관인이라면 도서관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주류세력에 대하여 사회약자를 대신하여 자신들의 사상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기존 주류세력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견해를 인권적 측면에서 말하면, 사회약자도 UDHR의 1조(존엄/평등)와 2조(차별금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인은 지배 세력에 맞서서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에 인식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크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밝힌 분석결과 이외에도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도서관직 중립성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 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Iverson 같이 도서관직의 객관성과 사회적 공리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적 연구자는 주민의 안전과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서관 고객과 그들의 정보접근에 최소한의 제도적 검열과 차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도서관 정보에 대한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접근은 엄격하게 법률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Samek과 같이 투명한 정부와 민주적 평등을 위해 도서관직 중립성의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적 도서관인은 도서관 고객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도덕적 가치, 그리고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지원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도서관인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 도서관인은 도서관 고객의 정보접근 자유에 관한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그리고 진보적 도서관인은 도서관 고객 중 사회약자에게 대한 UDHR 1조(존엄/평등), 2조(차별금지), 그리고 3조(생명/자유/안전)의 권리와 도서관인의 UDHR 18조(사상/양심/종교)와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서관직 중립성에 나타나 있는 인권사상은 UDHR의 5개 조항 즉, 1조(존엄/평등)와 2조(차별금지), 3조(생명/자유/안전), 18조(사상/양심/종교), 그리고 19조(의견/표현/정보접근)의 권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일반적으로 중립성이란 현재의 분쟁상황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는 성질이며, 또한 어떠한 사적 의견도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직 중립성과 관련해서,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중요하게 강조됨으로써, 그것의 철학적 또는 사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나로 특정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논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정의는 철학적이거나 정치적 또는 실제적이거나 윤리적 관점에 따라 그 성질이 변해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도서관직 중립성의 논쟁 속에 나타나 있는 인권사상을 분석하여 5가지의 UDHR 권리를 밝혔지만, 이 권리들 역시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직의 중립성을 정형화시키는 것은 욕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직 중립성을 말할 때 도서관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보수적이든 또는 진보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에 반하는 나쁜 사상들을 우리가 차별화시키지 못해 좋은 사상과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것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악의를 가진 도서관 고객을 UDHR의 권리에 따라 우리의 귀중한 공공재를 사용하면서 까지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양심과 직업적 윤리에 귀를 기울여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때 우리가 우리의 중립성을 고객과 타협하려 한다면 우리의 전문성은 혼돈의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재정적 간섭에 점점 더 심하게 노출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선호 (2013). 세계인권선언서를 기저로한 IFLA 선언서의 인권개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6-28.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Library Bill of Rights. [On-line], available: 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 Berninghausen, David (1972). Antithesis in Librarianship: Social Responsibility vs. the Library Bill of Rights. *Library Journal*, 97, 75-81.
- Bivens-Tatum, Wayne(2006). Are We Creating Dissident Librarians? *American Libraries*, 25.
- Blanke, Henry (1989). Librarianship and Political Values: Neutrality or Commitment. *Library Journal*, 114, 39-43.
- Branum, Candise(2014). The Myth of Library Neutrality. [On-line], available: candisebrnum.workprss.com/papers/the-myth-of-library-neutrality
- Costigan, Amelia(2010). The Neutrality Debate: An Update. St.John' s University. [On-line], available: [http://porres.org/DLIS/stjcoa/Samples%20of%20Student%20Work/LIS%20271%20\(Neutrality%20Paper\)%20-%20Costigan.pdf](http://porres.org/DLIS/stjcoa/Samples%20of%20Student%20Work/LIS%20271%20(Neutrality%20Paper)%20-%20Costigan.pdf)
- Dowd, Robert C. (1989). I Want to Find Out How to Freebase Cocaine or Yet Another Unobtrusive Test of Reference Performance. *Reference Librarian*, 25-26, 483-493.
- Foskett, D.J. (1962). The creed of a librarian; no politics, no religion, no morals. <North Western Group, Reference, Special and Information Section, Occasional Paper No. 3>, Manchester: North Western Group. 3-13.
- Gaul, Allison (2013). Neutrality in the Digital Battle spac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eutrality in Information Warfare. *Syracuse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Law*, 29(Fall), 51-110.>
- Good, Joseph (2006/2007). The Hottest Place in Hell: The Crisis of Neutrality in Contemporary Librarianship. *Progressive Librarian*, 28, 25-29.
- Hauptman, Robert (1976). Professionalism or Culpability? : An Experiment in Ethics. *Library Bulletin*, 50, 291-295.
- IFLA, FAIFE (2014).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s. IFRA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nd other Information Workers, 5. Neutrality. [On-line], available: www.ifla.org/publicaitons/ifla-code-of-ehitics-for-librarians-and-other-information-works-short-version
- Iverson, Sandy (1998). Librarianship and Resistance. *Progressive Librarian*, 15, 14-19.
- Janckson, Brian(2010). Library Neutrality. [On-line], available: capping.slis.ualberta.ca/

cap10/BrianJancson/index.html

Joyce, Steven L.(2000). Lesbian, Gay, and Bisexual Library Servi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c Libraries*, 39, 270-279.

Korean Library Association(1997),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On-line], available: archive.ifla.org/faife/ethics/klacode.htm

Mackintosh (2000). Report 5: The Principles of Humanitarian Action i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udy 4 in: The Politics of Principle: the principles of humanitarian action in practice. [On-line], available: www.odi.org.uk/sites/odi.org.uk/files/odi-assets/publications-opinion-files/305.pdf

Ross, Anthony & Nadia Caidi(2005). Action and reaction: Libraries in the post 9/11 environment .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7, 97-114.

Samek, Toni (2004). Internet AND Intention: An Infrastructure for Progressive Libraria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2, 1-18.

Stoffel, Carla J. & Patricia A. Tarin (1994). No place for neutrality: the Case for Multiculturalism. *Library Journal*, July, 46-49.

Weiner, P.B. (1987). Bad Bombers and Ethical Librarians: A Dialogue with Robert Hauptman and John Swan. *Catholic Library World*, 58 (Jan./Feb), 161-163.

Zandonade, T. (2004). Social epistemology from Jesse Shera to Steve Fuller. *Library Trends*, 52, 810-832.